

사회봉사 규정(3-5-21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‘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민주시민을 육성’이라는 교육목적 실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회봉사활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대상) 사회봉사활동 대상자는 2009학년도 이후 신입학생 및 2011학년도 이후 편입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이수기준) ① 재학생은 졸업 시까지 6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.
② 외국인유학생 및 장애학생은 졸업 시까지 3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.

③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인 외국인, 시간제등록생은 사회봉사활동을 면제한다.

제4조(이수시간 및 인정과목) ① 사회봉사활동의 이수 시간은 해당 사회봉사기관에서 인정한 시간으로 하며, 각기 다른 사회봉사기관에서 시행한 봉사활동을 누적하여 인정할 수 있다.
② 사회봉사활동의 이수 여부는 사회봉사 I, 사회봉사 II의 교과목으로 인정하며, 각 교과목은 30시간의 이수시간이 충족되어야 한다.

제5조(종류 및 이수범위) 사회봉사활동은 교내봉사, 교외봉사, 대체인정으로 구분한다.

① 교내봉사는 대학 내에서 행하는 공익 목적의 봉사활동에 한하며, 매 학기 초 사회 봉사 활동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총장의 승인 하에 봉사활동 이수범위를 지정한다.

② 교외봉사는 대학 외부에서 행하여지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봉사활동으로서 다음과 각 호에 한하여 이수범위를 지정한다.

1. 국가 기관 및 관공서
2. 관공서에서 인정하는 장애복지, 노인복지, 아동복지 기관 및 단체
3. 국제기구, NGO단체, 시민/사회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
4. 병원, 의원 등 의료시설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
5.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, 단체 및 프로그램

③ 대체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한다.

1. 헌혈은 1회당 10시간으로 인정하며 횟수 제한은 없다.
2. 소년소녀가장,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경우 1가정 당 15시간을 인정한다.
3. 장기기증 서약은 30시간으로 인정한다.
4. 공익 향상에 기여하여 외부표창을 받은 경우 30시간으로 인정한다.

제6조(운영방법) ① 사회봉사는 매년 초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학생은 사회봉사를 시행할 기관(단체)를 선택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, 대학은 봉사활동과 관련된 기관(단체) 및 해당 프로그램을 안내하여야 한다.

③ 사회봉사 이수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연도의 사회봉사 운영계획에 따라 사회봉사활동 계획서 및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대체인정의 경우 해당 증빙내역으로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.

④ 기관 및 단체에서 사회봉사활동 결과를 일괄 인정하여 공문서로 통보한 경우에는 개인별 확인서를 갈음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, 결과에 대한 평가관리 지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8조(기타) 사회봉사활동 운영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적용례)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 사회봉사활동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이 규정에 의해 인증할 수 있다.